

# 대구직할시달서구보건소수가조례증개정조례 (안) 심 사 보 고 서

94. 4. 22

조례정비특별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: 박양현 사회·도시위원장의외 12인
- 나. 제출일자: 93. 12. 7
- 다. 회부일자: 93. 12. 23
- 라. 상정일자: 94. 4. 22

## 2. 제안설명요지(설명자: 김영수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보건소법 개정(91.3.8) 및 보건소 시행령 (91.10.8)개정으로 법조문 정비 및 보건소내 입원실 및 관련시설이 없으므로 입원 관계 조문 삭제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골자

- 보건소내 입원시설이 없는 관계로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에 관한 조문 삭제함.

## 3. 전문요원 검토 의견 요지(전문위원 허면)

동 조례는 보건소의 운영에 있어 진료비와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는 조례로 동 조례 중 제1조에 보면 제6조라 표시된 부분이 보건소법개정(91.3.8)으로 인해 8조로 관련 조문의 표시수정이며, 제8조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별지1호서식 입원서약서 개정, 삭제 부분은 당 보건소가 입원실등 관련 시설이 없어 입원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실효성없는 입원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같이 함.

4. 토론요지

없음.

5. 수정안요지

없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반대 : 없음.

7. 첨부 : 대구직할시달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(안) 1부

## 대구직할시달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(안)

대구직할시달서구보건소수가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보건소법 "제6조"를 "제8조"로 한다.

제8조 "제1항" 및 "제2항"을 각각 삭제하고 "(별지 제1호 서식) 입원서약서"를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조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보건소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직할시 달서구 보건소(이하 "보건소"라 한다)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8조(입원서약서 및 보증) ① <u>보건소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 및 신용있는 보증인을 연서한 입원서약서(별지 제1호서식)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~10%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예납시킬 수 있으며 이 보증금은 퇴원시 본인에게 정산한다.</u></p> <p>[별지 제1호 서식] 입원서약서</p>	<p>제1조(목적) ..... 제8조..... ..... ..... .....</p> <p>제8조(입원서약서 및 보증) ① (삭 제)</p> <p>② (삭 제)</p> <p>[별지 제1호 서식] (삭 제)</p>